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04
----------	-------

발의연월일 : 2025. 11. 24.

발 의 자 : 이학영 · 윤호중 · 정혜경
안호영 · 김기표 · 박희승
박민규 · 김영호 · 위성곤
백선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동물장묘업자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자와 종사자(이하 “영업자등”이라 함)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영업자등은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동물병원과의 연계를 확보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애견숍과 같은 동물판매업자가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투명한 유리상자 안에 반려동물을 전시하여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이 작은 상자 안에서 사료를 먹고 잠을 자고 생리현상까지 해결하고 있어 위생·건강 관리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대중에게 수시로 노출되어 자유로운 운동·휴식·수면이 보장되지 않는 등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이에 동물판매업자에 대하여 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동물의 운동·

휴식·수면 보장과 위생·건강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제3호 및 제101조제1항제10호 신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판매를 위하여 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동물의 운동·휴식·수면 보장과 위생·건강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제101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78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전시할 때 동물의 운동·휴식·수면 보장과 위생·건강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영업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 ③ (생략) ④ 동물판매업자(동물생산업자 및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판 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2. (생략) <u><신설></u>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u>판매를 위하여 동물을 전시 하는 경우 동물의 운동·휴식 ·수면 보장과 위생·건강 관 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 준을 충족할 것</u>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략) <u><신설></u>	제101조(과태료) ① ----- ----- ----- ----- ----- 1. ~ 9. (현행과 같음) 10. <u>제78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 여 동물을 전시할 때 동물의 운동·휴식·수면 보장과 위</u>

② ~ ⑤ (생 략)	<u>생 · 건강 관리에 필요한 사</u> <u>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u> <u>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u> <u>지 아니한 영업자</u> ② ~ ⑤ (현행과 같음)
--------------------	--